

Korea Agro-Fisheries Trade Corp.

# at | Focus

Vol. 07



## 대 EU 수출시 FTA 특혜관세 받으려면 - 수출업체가 원산지증명 발급해야

1. 한-EU FTA 개요
2. 대 EU 한국식품수출현황
3. 주요 품목별 관세 양허내용
4. 원산지 증명
  - 원산지증명서(C/O)란
  - FTA 협정별로 필요한 원산지 증명서 종류
  - 한-EU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란
5. 주요 품목별 원산지 규정

2011  
07

**at** 농수산물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Trade Corporation  
수출전략처 식품수출정보팀

## 대 EU 수출시 FTA 특혜관세 받으려면 - 수출업체가 원산지증명 발급해야

1. 한-EU FTA 개요	3
2. 대 EU 한국식품수출현황	4
3. 주요 품목별 EU 양허내용	7
4. 원산지 증명	16
- 원산지증명서(C/O)란	16
- FTA 협정별로 필요한 원산지 증명서 종류	16
- 한-EU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18
-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란	20
5. 주요 품목별 원산지 규정	26



이달 1일부터 발효된 한-EU FTA를 활용하여 한국식품수출업체가 대 EU 수출시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기본조건인 원산지 증명 관련 내용을 정리한 것임. 한-EU FTA협정문과 부속서, 관세청 자료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 1. 한-EU FTA<sup>1)</sup> 개요

### 가. 개요 및 경과

□ GDP 기준 세계 최대 경제권인 EU 27개국<sup>2)</sup>과 한국과의 FTA가 지난 7월1일 잠정 발효됨

- 2009년 7월 협상의 실질 타결이후 협정문을 21개의 회원국 언어로 번역 및 이탈리아의 반대 등으로 2010년 10월6일 EU 집행위원회 정식 서명

#### [잠정발효까지 경과]

- 2007년 5월 협상 출범
- 2009년 7월 협상 실질 타결
- 2009년 10월 15일 가서명
- 2010년 10월 6일 서명
- 2011년 7월 1일 한-EU FTA 잠정발효
  - EU는 절차의 비효율로 인한 FTA 정식발효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정식발효에 앞서 잠정발효(EU공동체 배타적 권한 사항 부분) 개시<sup>3)</sup>

1) 자유무역협정 FTA(Free Trade Agreement)는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으로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지역무역협정으로 2007년 기준 세계교역량의 50%이상이 지역무역협정내 교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추정됨. WTO 출범('95.1)이후 매년 급속히 확산하여 2011.5 현재 297개가 발효중임

2) BE(벨기에왕국), BG(불가리아공화국), CZ(체코공화국), DK(덴마크왕국), DE(독일연방공화국), EE(에스토니아공화국), IE(아일랜드), GR(그리스공화국), ES(스페인왕국), FR(프랑스공화국), IT(이탈리아공화국), CY(사이프러스공화국), LV(라트비아공화국), LT(리투아니아공화국), LU(룩셈부르크대공국), HU(헝가리공화국), MT(몰타), NL(네덜란드왕국), AT(오스트리아공화국), PL(폴란드공화국), PT(포르투갈공화국), RO(루마니아), SI(슬로베니아공화국), SK(슬로바키아공화국), FI(핀란드공화국), SE(스웨덴왕국), GB(영국)

3) 잠정발효는 상대국에 즉시 특혜관세 혜택이 주어짐. 정식발효는 27개 EU 회원국의 비준절차가 완료되는 시점(통상 2~3년 소요)

- 상품협정문은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에 대해, 관세 철폐일정에 따라 각 상품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도록 규정함
- EU 측은 농산물 분야를 전반적으로 조기에 개방하기로 함
  - EU 측은 쌀을 제외한(39개세번4) 나머지 품목에 부과되는 관세를 5년 이내 철폐
  - EU 측은 일부 과일 및 채소류에 대해 일정기간 기존 시장진입가격제도를 유지(16개 세번5), CN 2007년 기준)
    - \* 시장진입가격제도 : EU 로 수입되는 과일 및 채소의 수입가격이 일정 가격보다 낮을 경우 관세 상당치를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

## 2. 대 EU 한국식품수출현황

- 농림축수산물
  - 최근 5년 대 EU 식품수출금액은 2006년 대비 약3배 증가하였음. 최고 증가분야는 기타조제 농산품임. 2010년 농림축수산물 EU 수출금액은 332백만달러. 이중 농산물은 196백만달러(59%), 수산물은 128백만달러(39%)였음
    - 농산물은 인삼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수출품목이 증가함
    - 수산물은 참치류, 기타어류의 수출이 크게 늘어 4.5배의 수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임산물은 박스페렛 등 수출이 증가하였으며, 신선 밤 수출이 2009년 부터 10만불이상 실적을 보이고 있음
    - 축산물은 수출실적은 큰 변화가 없으나 수출품목 수가 소폭 확대

4) 상세품목 리스트는 본자료의 부록을 참조  
5) 상세품목 리스트는 본자료의 부록을 참조

## &lt;최근 5년간 대EU 수출동향&gt;

(단위: USD)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106,067,627	162,167,678	245,642,418	259,100,609	332,671,741
농산물	43,909,215	49,024,151	140,278,023	154,137,971	196,537,815
수산물	55,845,839	107,250,851	95,501,253	96,998,104	128,358,743
임산물	4,027,848	3,971,901	6,132,642	4,798,754	5,411,180
축산물	2,284,725	1,920,775	3,730,500	3,165,780	2,364,003

자료: KATI

## □ 농산물

(단위: USD)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총 수출 계	43,909,215	49,024,151	140,278,023	154,137,971	196,537,815
기타조제 농산품	680,949	1,205,299	73,588,897	89,295,994	119,341,742
당류	105,482	145,356	130,736	4,710,821	17,377,976
면류	10,501,552	12,500,286	14,146,865	14,652,326	15,690,973
채소류	3,048,921	6,123,485	9,134,205	9,888,447	9,151,428
식물성 액즙	2,313,844	4,394,593	6,518,868	5,152,322	4,493,564
버섯류(농산물)	1,065,351	2,166,936	4,328,252	3,563,221	4,012,029
식물성섬유	1,371,311	0	0	2,837,341	3,540,766
과자류	2,832,072	2,575,189	2,730,064	2,493,616	3,023,589
인삼류	3,049,169	3,012,422	3,120,505	2,626,026	2,757,894
소오스류	2,257,328	2,514,879	1,999,850	2,022,422	2,679,974
커피류	868,184	171,310	790,899	1,876,245	2,473,852
음료	920,287	1,565,156	2,597,941	2,661,270	2,191,591
화훼류	1,031,046	830,549	9,548,697	2,583,244	1,938,911
과실류	451,778	1,138,586	1,061,724	808,011	1,574,477
주류	1,238,722	1,722,767	3,545,533	1,033,454	1,458,275
곡류	122,750	271,961	507,889	901,989	1,104,164

자료: KATI, 중분류기준

주) 1,000천달러 이상 수출품목

## □ 임산물

(단위: USD)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4,027,848	3,971,901	6,132,642	4,798,754	5,411,180
페렛, 박스페렛 등	618,781	636,180	739,909	1,283,300	2,355,205
목재 케이스, 상자 등	567,397	1,341,791	1,202,129	675,739	919,410
벽지류(기타)	0	0	1,838,180	623,991	476,364
기타목제품(기타)	373,286	808,499	485,734	343,897	332,821
기타산림수(분재용)	258,448	322,695	48,868	142,323	255,778
목탄(기타)	0	56,435	55,904	10,740	145,866
밤(비탈각/신선,건조)	261	0	5	244,804	128,500

자료: KATI

주) 100천달러 이상 수출품목

## □ 축산물

(단위: USD)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2,284,725	1,920,775	3,730,500	3,165,780	2,364,003
젤라틴	1,559,169	907,220	1,218,335	1,920,245	931,500
곤충류	0	115,699	912,821	556,390	593,401
기타단백질물질	930	137,908	187,951	250,276	301,331
인조꿀	4,286	39,394	122,518	135,954	161,630
동물성 유지	119,801	0	0	187,954	160,807
기타 말	0	0	0	0	95,073
치이즈	0	0	0	0	43,914
알부민(기타)	20,002	0	60,140	0	25,313
변성유장	0	0	0	0	12,987
개	0	907	3,954	11,362	10,050

자료: KATI

주) 10천달러 이상 수출품목

## □ 수산물

(단위: USD)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55,845,839	107,250,851	95,501,253	96,998,104	128,358,743
참치	5,433,330	33,487,239	28,208,067	29,613,629	50,479,606
기타어류	9,539,252	20,114,277	27,441,392	30,620,501	27,211,134
오징어	9,344,926	18,924,348	12,088,324	5,330,860	8,273,627
바지락	4,043,825	5,106,046	2,262,127	3,531,549	6,621,281
어류제품	8,073,081	8,565,759	6,768,367	5,536,892	5,114,446
명태	222,438	36,823	265,269	288,757	4,798,999
대구	2,426,690	3,493,110	3,346	1,292,687	4,285,938
게살	1,584,504	2,042,777	3,065,719	3,301,601	3,198,139
김	1,855,508	1,727,505	2,109,469	2,025,634	2,731,305
민어	2,600,387	2,753,350	2,014,226	1,236,900	2,454,777
돔	1,321,835	1,262,834	1,549,330	2,433,876	2,275,273
바다가재	30,375	28,406	374,900	658,080	1,493,411
굴	1,060,022	1,542,497	1,516,666	1,310,586	1,472,634
갑오징어	1,191,314	1,422,331	861,278	1,405,756	1,084,306
기타넙치	481,445	1,292,432	492,299	599,815	971,874
새우	107,004	71,633	102,230	269,755	700,104
상어	13,255	7,522	577,148	1,628,632	603,109

자료: KATI

주) 500천달러 이상 수출품목

## 3. 주요 품목별 EU 양허내용

## 가. 농산물

□ 전년도 기준 한국산 농산물의 대 EU 주 수출 품목은 라면, 채소주스, 국수, 큰 느타리버섯 등임

- 2010년 기준 100만 달러이상 수출실적을 기록한 품목의 수출합계는 약 196백만 달러(이중 무관세품목 제외하면 165백만달러)로 한-EU FTA 발효이전과 비교하여 면제되는 관세금액을 추산<sup>6)</sup> 해 보면 약 12.4백만 달러로 약 7.5%의 EU 수입자 비용이 하락하게 됨

6) EU 세율은 수출상품의 종류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세율로 수입되는 경우의 추산세액임. 단, 이 금액은 백만달러이상 수출한 품목중에서 무관세품목실적은 제외 한것임



- 제1위 수출품목인 라면은 증가세 6.4% + 종량세 100kg당 24.6유로가 즉시 철폐되어 2010년 수출실적 기준 15%의 수입자 비용 하락이 기대됨

## <농식품 수출실적 및 관세>

품목	한국 HS Code	EU CN Code	2010년 수출		종전 EU 관세율(%)	EU 양허
			중량(kg)	금액(USD)		
리신의염, 리신	2922413000 2922413000	29224000	67,269,520	104,604,655	6.30	0*
기타 당류, 당에테르 등	2940001090 2940002090	29400000	48,621	14,508,925	6.50	0
라면	1902301010	19023010	3,138,255.5	9,229,590	6.4+24.6€/100kg/net	0
채소주스	2009802000	20098099	6,711,870.9	5,067,869	17.60	0
아미노산(기타)	2922499000	29224995	326,200	6,094,701	6.50	0
국수	1902191000	19021910	1,719,776.2	3,016,476	7.7+24.6€/100kg	0
당류	1702909000	17029099	858,990	2,870,808	0.4/100kg	0
조제 품 기타	2106909099	21069098	61,103.2	2,814,336	9+EA	0
큰 느타리버섯	0709594010	07095990	564,830	2,633,077	6.40	0
커피엑스	2101111000	21011111	156,933.3	1,979,018	9.00	0
김치	2005991000	20059910	613,829	1,899,546	6.40	0
음료	2202909000	22029010	2,368,109.7	1,868,627	9.60	0
글루탐산나트륨	2922422000	29224200	1,174,719	1,781,291	6.50	0
속울채운파스타	1902200000	19022091	616,687.9	1,584,852	8.3+6.1€/100kg	0
선인장류	0602901060	06029099	161,511.2	1,496,658	6.50	0
기타(채소종자)	1209919000	12099190	13,315.3	1,112,250	3.00	0
기타버섯(신선)	0709599000	07095990	238,255	1,051,852	6.40	0
과즙음료	2202902000	22029010	1,518,699.6	1,028,440	9.60	0
파스타(기타)	1902309000	19023090	676,199.7	1,025,753	6.4+9.7€/100kg/net	0

자료: KATI, 외교통상부 FTA 포털

주) EU 양허유형 "0" 는 즉시철폐를 의미함

주) 1,000천달러 이상 수출품목, KATI '품목' 기준, EU의 종전관세율 free품목은 제외

주) 한국품목과 EU세번 대응은 수입시 실제 품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선 배, 단감, 포도, 사과, 감귤의 FTA타결로 인한 변화는 아래와 같음

<주요 신선과일 수출실적 및 관세>

(단위: kg, USD)

품목	한국 HS Code	EU CN Code	2010년 수출		종전 EU 관세율(%)	관세철폐일
			중량	금액		
신선 배	0808201000	08082050	70,298	180,914	진입가격제도	0(즉시)
신선 단감	0810902000	08109095	-	-	8.8	0(즉시)
신선 포도	0806100000	08061010	225	65	진입가격제도	이행 17년차의 첫째날
신선 사과	0808100000	08081080	600	2,436	진입가격제도	이행 10년차, 20년차 첫째날 <sup>7)</sup>
신선 감귤	0805201000	08052090	99,284	75,579	진입가격제도	이행 15년차의 첫째날

자료: KATI, 외교통상부 FTA 포털

주) 한국품목과 EU세번 대응은 수입시 실제 품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선사과의 경우 진입가격(entry price)과 연동되는 관세를 적용하며, 발효일 직전 최혜국 실행관세율과 현행 최혜국 실행관세율 중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함. 이행 10년차의 첫째날 관세가 철폐됨
- 채소류 중 신선 토마토는 최혜국 실행관세율을 유지하는 품목임

<한국산 사과 적용 관세 사례(7.14)>

(유효적용기간: 2011.7.1-7.15)

C1	서류 : L 001 (AGRIM 발행 수입증 제시)	자유 유통 허용
V1	진입가격이 45.70 EUR / 100 kg 이상인 경우	0 %
V2	진입가격이 44.80 EUR / 100 kg 이상인 경우	3.90 % + 0.90 EUR / 100 kg
V3	진입가격이 43.90 EUR / 100 kg 이상인 경우	3.90 % + 1.80 EUR / 100 kg
V4	진입가격이 43.00 EUR / 100 kg 이상인 경우	3.90 % + 2.70 EUR / 100 kg
V5	진입가격이 42.00 EUR / 100 kg 이상인 경우	3.90 % + 3.70 EUR / 100 kg
V6	진입가격이 41.10 EUR / 100 kg 이상인 경우	3.90 % + 4.60 EUR / 100 kg
V7	진입가격이 40.20 EUR / 100 kg 이상인 경우	3.90 % + 5.50 EUR / 100 kg
V8	진입가격이 39.30 EUR / 100 kg 이상인 경우	3.90 % + 6.40 EUR / 100 kg
V9	진입가격이 0 EUR / 100 kg 이상인 경우	3.90 % + 23.80 EUR / 100 kg

자료: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taric/taric\\_consultation.jsp](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taric/taric_consultation.jsp)

7) 후지품종의 경우, 이행 20년차의 첫째날부터 관세철폐

- 신선포도의 경우 진입가격(entry price)제도와 연동되어 7월14일 현재 적용되는 관세는 아래와 같음
  - 한국산 신선 포도 관세: 158.52€/100kg(2011. 7.8-7.20)
- 신선감귤의 경우 진입가격(entry price)와 연결된 관세를 적용하며 15년차되는 첫째날 관세가 철폐됨. 7.14 현재 적용관세는 아래와 같음
  - 한국산 신선 감귤 관세: 13.3%(2011. 7.1-10.31)

□ 고추장, 된장, 유자차, 막걸리 등의 관세변화

- 장류, 유자(조제), 막걸리는 즉시 관세가 철폐됨

<장류 등 수출실적 및 관세>

(단위: kg, USD)

품목	한국 HS Code	EU CN Code	2010년 수출		종전 EU 관세율(%)	EU 양허
			중량	금액		
고추장	2103901030	21039090	375,046.2	831,790	7.7	0
된장	2103901010	21039090	152,133.4	190,148	7.7	0
유자차	2008301000	20083079	69,551.6	107,681	20.8	0
막걸리	2206002030	22060059	27,645	35,746	7.7€/hl	0

자료: KATI, 외교통상부 FTA 포털

주) 한국품목과 EU세번 대응은 수입시 실제 품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나. 수산물

- 대 EU 수산물 수출실적은 2010년도 기준 총 128백만달러로 수출 수산물의 대표품목은 참치, 오징어, 바지락, 명태 등임

○ EU는 수산물 시장을 전반적으로 조기 개방하여 모든 품목의 관세가 5년내 완전 철폐됨

- 즉시 철폐 : 냉동 황다랑어(조제용), 냉동 새우, 냉동 가다랑어, 냉동 갑오징어, 냉동 대구 등
- 3년 철폐 : 연육조제품, 냉동 기타조개, 냉동 꼴뚜기, 냉동 문어 등

### <수산물 주요품목의 수출실적 및 관세>

(단위: kg, USD)

품목	한국 HS Code	EU CN Code	2010년 수출		종전 EU 관세율(%)	EU 양허
			중량	금액		
황다랑어(조제용)	0303420000	030342	18,396,190	38,015,212	20~22	0, 3*
기타어류(냉동피레트)	0304299000	03042945	1,481,479.9	16,827,966	18	3**
황새치	0303610000	03036100	2,140,728.5	12,384,847	7.5	3
기타어류	0303799099	030379	8,135,448.1	10,220,131	7.5~22	0~5**
오징어(냉동)	0307491020	030749	2,115,804.5	8,197,658	6~8	0~3
바지락(냉동)	0307991130	03079918	1,524,684	6,513,079	11	3
명태(피레트/냉동)	0304291000	03042985	4,667,826.4	4,667,827	13.7	5
대구	0303520000	030352	1,304,517	4,285,938	12	0
생선묵(게맛의 것)	1604204010	16042005	1,893,131.7	3,963,962	20	3
붉은 대게살	1605101091	16051000	495,959.8	3,109,226	8	0
민어(냉동)	0303799095	03037998	615,303.8	2,454,777	15	3
김	2106904010	20089999	449,999.6	2,437,409	18.4	0
돔(기타)	0303794090	03037971	1,921,465.4	2,275,273	15	5
바다가재(냉동)	0306120000	03061210 03061290	146,508.8	1,493,411	6 16	3 3
생선묵(게맛의 것 이외)	1604204090	16042005	379,977.1	1,147,817	20	3
갑오징어(냉동)	0307491010	03074901 03074911 03074918	386,057.2	1,041,676	6~8	0

자료: KATI, 외교통상부 FTA 포털

주1) 1604로 가공되는 조제용 황다랑어 이외의 것은 3년 균등 철폐, 그 외의 것은 즉시 철폐

주2) 한국의 경우 냉동황다랑어 피레트가 대부분으로 18%/ 3년철폐

- 황새치의 관세율은 발효이전 7.5%에서 한-EU FTA발효로 3년 균등 철폐되며 연도별 관세는 아래와 같음. 즉 3차년도가 끝난 다음날부터 관세가 철폐됨
  - 1차년도: 5.6%(2011.7.1~2012.6.30)
  - 2차년도: 3.7%(2012.7.1~2013.6.30)
  - 3차년도: 1.8%(2013.7.1~2014.6.30)
  
- 기타어류의 피레트는 3년 균등 철폐되며, 대부분 황다랑어 피레트로, 이를 살펴보면 첫째 관세는 아래와 같음
  - 13.5%(2011.7.1~2012.6.30)
  
- 냉동바지락의 관세율은 3년 균등 철폐되며 첫째 관세는 아래와 같음
  - 8.2%(2011.7.1~2012.6.30)
  
- 명태피레트의 관세율은 5년 균등 철폐되며 첫째 관세는 아래와 같음
  - 11.4%(2011.7.1~2012.6.30)
  
- 생선묵(게맛의 것)의 관세율은 3년 균등 철폐. 첫째 관세는 아래와 같음
  - 15%(2011.7.1~2012.6.30) / 원산지 면제물량 별도
  
- 민어의 관세율은 3년 균등 철폐되며 첫째 관세는 아래와 같음
  - 11.2%(2011.7.1~2012.6.30)
  
- 돔의 관세율은 5년 균등 철폐되며 첫째 관세는 아래와 같음
  - 12.5%(2011.7.1~2012.6.30)

□ 굴, 넙치, 전복은 3~5년 내에 철폐되며 가공형태별 차이가 있음

(단위: kg, USD)

품목	한국 HS Code	EU CN Code	2010년 수출		중전 EU 관세율(%)	EU 양허	1차년도 <sup>8)</sup> 적용관세율
			중량	금액			
냉동 굴	0307102000	03071090	122,320	785,352	9	3	6.7
신선 굴	0307101090	03071090	-	-	9	3	6.7
굴 (밀폐용기)	1605901010	16059030	87,999	687,282	20	3	15
냉동 넙치	0303310000	03033970	9,504	10,259	15	5	12.5
냉동 기타넙치	0303390000	03033110*	215,222	971,874	7.5	0	0
활 넙치	0301990000	03019980	-	-	16	5	13.3
전복 (밀폐용기)	1605901091	16059090	-	-	26	3	19.5
활 전복	0307911200	03079100	-	-	11	3	8.2

자료: KATI, 외교통상부 FTA 포털

주) 냉동기타넙치는 그린란드 halibut 품목 사례로 실제수출품목과 다를 수 있음. 다른 품종은 EU 양허표를 참조. 참고로 한국은 EU 냉동넙치를 수입시 첫해년도에 800톤을 선착순으로 허용하고 있음

## 다. 임산물

□ 2010년도 기준 대 EU 임산물 수출실적은 5.4백만달러, 관세는 발효즉시 모두 철폐됨

- 대 EU 수출임산물중 10만달러 이상 실적 품목은 총 임산물의 85%를 차지하며, 관세혜택은 약 13만달러, 10만달러 이상 품목의 2.9% 상당임

(단위: kg, USD)

품목	한국 HS Code	EU CN Code	2010년 수출		중전 EU 관세율(%)	EU 양허
			중량	금액		
페렛, 박스페렛등	4415200000	44152020	1,337,103.9	2,355,205	3	0
목재 케이스, 상자 등	4415100000	44151010	1,384,597.8	919,410	4	0
벽지류(기타)	4814901090	48148010	28,482.3	476,364	free	0
기타목제 품(기타)	4421909000	44219098	28,273.8	332,821	free	0
기타산림수(분재용)	0602902091	06029049	30,732.6	255,778	8.3	0
목탄(기타)	4402909000	44029000	91,395	145,866	free	0
밤(비탈각/신선,건조)	0802401000	08024000	60,000	128,500	5.6	0

자료: KATI, 외교통상부 FTA 포털

8) 2011년7월1일~2012년 6월30일

그 외 표고, 건조 감, 밤 조제품도 즉시 관세가 철폐됨

- 2010년 수출금액은 거의 없음

(단위: kg, USD)

품목	한국 HS Code	EU CN Code	2010년 수출		중전 EU 관세율(%)	EU 양허
			중량	금액		
표고(신선)	0709592000	07095930	-	-	5.6	0
표고(건조)	0712391020	07123900	10	339	12.8	0
표고(조제)	2003901000	20039000	-	-	18.4	0
감(건조)	0813400000	08134095	-	-	2.4	0
밤(냉동)	0811901000	08119095	-	-	14.4	0
밤(조제)	2008191000	20081919 20081999	752	7,923	11.2 11.8	0 0

자료: KATI, 외교통상부 FTA 포털

목재류(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

- 목재류는 3년이내 모두 관세가 철폐됨

(단위: kg, USD)

품목	한국 HS Code	EU CN Code	2010년 수출		중전 EU 관세율(%)	EU 양허	1차년도
			중량	금액			
합판(베니어)	441299929	44129950	62,205	48,994	10	3	7.5
섬유판	4411*	4411*	170,883	111,238	7	3	5.2
파티클보드	4410*	4410*	-	-	7	3	5.2

자료: KATI, 외교통상부 FTA 포털

주) 품목의 사양에 따라 EU 세번은 8자리로 분류되나 그 종류가 다양하여, 적용세율과 양허유형이 동일한 섬유판과 파티클보드는 세번 4단위로만 표기하였음

**라. 축산물**

□ 2010년 대 EU 수출축산물중 10만달러이상 수출품목의 수출실적은 아래와 같으며 모두 관세가 즉시 철폐 됨

(단위: kg, USD)

품목	한국 HS Code	EU CN Code	2010년 수출		종전 EU 관세율(%)	EU 양허
			중량	금액		
젤라틴	3503001010	35030010	219,050	931,500	7.7	0
곤충류(기타)	0106902090	01069000	1,193	593,401	free	0
기타단백질물질계	3504002090	35040000	2,979	301,331	3.4	0
인조꿀	1702901000	17029060	98,000	161,630	0.4€/100kg	0
동물성 유지, 분획물	1516109000	15161010 15161090	1,260	160,807	12.8 10.9	0

자료: KATI, 외교통상부 FTA 포털

**♣ [참고]**

▶ HS 코드 구성

[신선 굴 HS 코드 살펴보기]

**0307.10-2000**

- 류(Chapter)
- 호(Heading)
- 소호(Sub-heading)
- HSK(한국내 소호)

Chapter(류)	Heading(호)	Sub Heading(소호)
03	0307	030710
통상2자리	앞2자리는 '류'	앞4자리 '호'를 세분화

\* 통상 HS 코드는 '소호'를 의미



## 4. 원산지 증명

한-EU FTA 발효로 대 EU수출시 우리식품이 특혜관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산지 증명서를 무역서류에 첨부해야 함. 특히 건당 6천유로 초과 물품은 한국 관세청에 원산지인증수출자로 등록된 업체만 원산지증명을 할 수 있음. 이는 6000천유로 초과 수출자는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 특혜관세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을 의미함. 수출시 상업서류에 원산지 증명 문구를 넣어서 작성하는 것으로 특정양식은 없음

### 가. 원산지증명서(C/O)란

- ① 원산지란 물품을 생산한 나라(동·식물이 성장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며 그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를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라 함
- ② 즉 “원산지증명서”라 함은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 사육, 제조 또는 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함

### 나. FTA 협정별로 필요한 원산지 증명서 종류

- ① FTA 협정별로 원산지 증명서가 다름

종 류	적용국가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칠레,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미국
원산지신고서 (Origin Declaration)	EU, EFTA
연결원산지증명서 (Back to Back Certificate of rigin)	아세안(역내 경유국에서 발급)

## ②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 기관발급제 〉<sup>9)</sup>

-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국가의 관세당국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제도 (한-싱가포르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 〈 자율발급제 〉

-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가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 서명(당해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관련 서류에 수출자가 원산지국가를 기재할 것을 포함)하여 사용하는 제도 (한-칠레 FTA, 한-EFTA FTA(스위스産치즈는 기관발급), 한-미FTA, 한-EU FTA)

※ 한-EU FTA는 건당 수출금액이 6,000유로 초과인 경우, 원산지인증 수출자만 발급 가능. 6,000유로 이하는 인증 없이 업체가 자율 발급

## &lt;FTA별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gt;

FTA 체결국	발급기관	증명서 양식	유효기간
싱가포르	상공회의소, 관세청, 자유무역관리원	국별 증명서식	1년
ASEAN	세관, 상공회의소, 수입자	통일증명서식(AK)	6개월
인도	세관, 상공회의소	통일증명서식(KIN)	1년
칠레	수출자 자율발급	양국간 통일증명서	2년
EFTA	수출자 자율발급	송품장 신고방식	1년
미국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자율발급	양식없음	4년
EU	수출자 자율발급	송품장 <sup>10)</sup> 신고방식	1년

자료: 관세청

주) 증명서 유효기간 전에 물품이 수입국 항에 도착하면 특혜관세 적용가능

주) 한-EU FTA 특혜원산지 사용언어는 EU 당사국언어 및 한글

9) 2010년 상공회의소가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는 총 88.5만 건으로 이중 FTA관련 원산지 증명서는 4.1만 건이었음

10) Origin/Invoice declaration

## 다. 한-EU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 EU수출시 특혜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 제출은 필수
  - 우리나라의 수출품이 EU의 특혜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수출자(업체)는 원산지 증명서를 수입국(EU) 세관당국에 제출해야 함
  - 원산지 증명이 의심되는 경우, 한-EU FTA는 수입국 관세당국이 수출국 관세당국에 원산지요건 충족여부 검증을 요청할 수 있음(간접증명방식)
  
- EU는 건당 6,000유로 초과하는 수출에 대하여는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에 대하여만 FTA 특혜 관세혜택을 부여함
  - 인증수출자 지정: 한국의 관세당국이 수출자가 인증수출자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한 이후 지정함
  - 1건당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출의 경우, 인증수출자만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음
  - 단, 1건당 6,000유로 이하 수출물품은 인증수출자가 아닌경우에도 업체 스스로 원산지 증명서를 자율발급함
  - 원산지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2개월
  - 우리나라는 종전의 인증수출자 제도를('08.7) HS 6단위 포괄적 인증제 도입, 업체별/품목별로 이원화한 인증제도로 개선하여, 2010년 4월부터 현재와 같은 '인증수출자' 제도를 시행함
  - EU는 1975년부터 인증수출자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음
  - EU 수입자가 수입신고 당시에 특혜관세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입통관 2년 이내에 사후신청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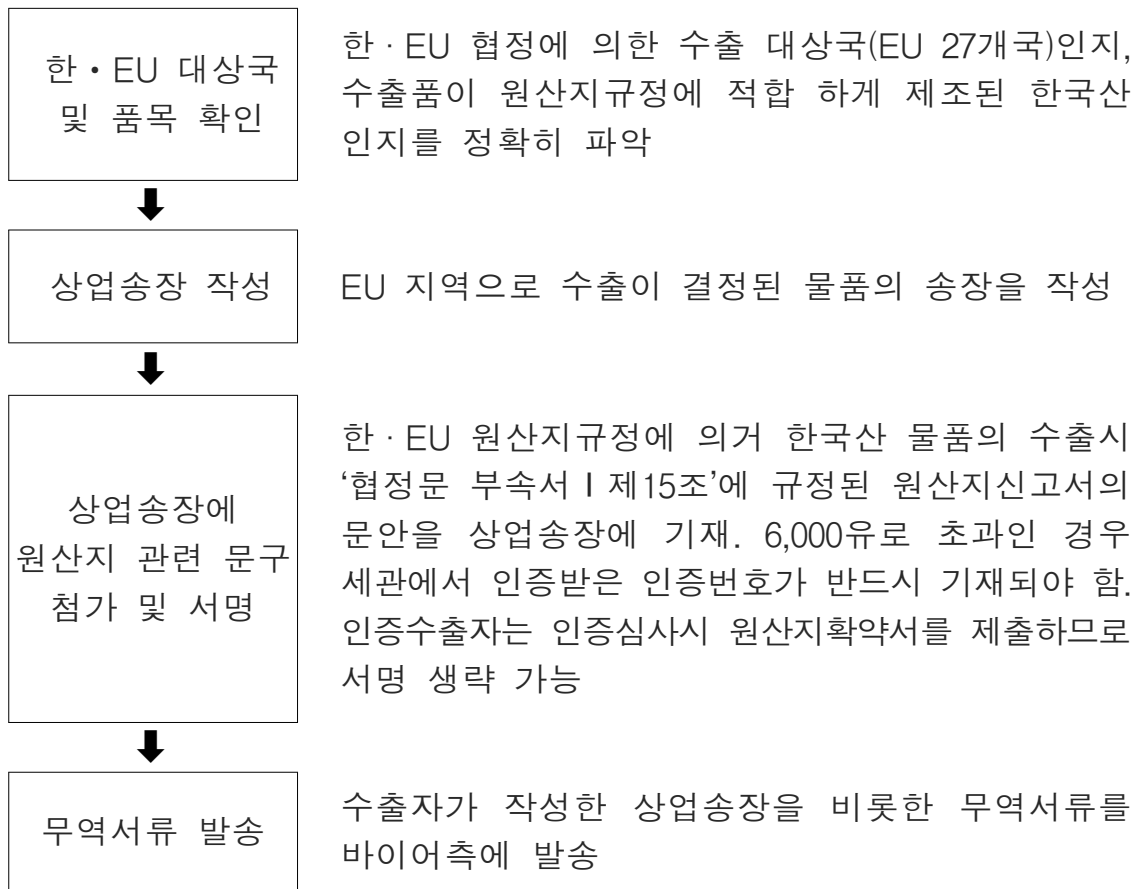
- 원산지 증명서는 인보이스 신고서(Invoice Declaration) 방식임

<수출자 송품장(invoice)상 원산지 문구11>

“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인증수출자번호)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원산지) preferential origin.”

" 이 서류 (세관인증번호...12)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제품은...13)의 특혜원산지 제품임을 신고한다. "

□ EU수입자에게 원산지증명이 포함된 무역서류 발송 과정



11) 한-EU FTA 협정문 부속서 I, 제 15조상에 명시 되어 있음  
 12) 인증수출자가 이서류를 작성하는 경우 괄호에 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 빈칸으로 둠, 6천유로 초과 수출자는 반드시 인증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13) 제품의 원산지를 표기

**라.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란**

- 관세당국이 FTA가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임. 원산지 관리 능력이 있다고 관세당국이 인증한 업체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매우 간편하게 됨
- 원산지인증수출자는 EU 수출시 인보이스 등 상업서류의 원산지 신고서에 자신의 인증수출자 번호를 기재하고 수출자가 서명하는 방식임
- EU 수출시에는 원산지 증명서를 업체가 자율발급하므로 기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여 발급받는 시스템보다 시간과 노력, 비용이 절약됨
- 7월15일 현재 한-EU FTA 발효로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는 인증받은 원산지인증수출자수는 2,516업체임
  - 총 4,333업체<sup>14)</sup> 의 58%인 2,516업체는 수출금액 기준으로는 85%임
  - 이중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받은 업체는 2,244업체임(89%)
  - 총 4,333업체 중 농림수축산물<sup>15)</sup> 관련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등록된 업체는 21업체임

**<원산지인증수출자 현황(7.15 현재)>**

총 해당 업체 수	인증업체 수	
4, 333 (이중: 농산물관련 품목을 건별 6000유로 이상 수출한 업체 중 특혜관세 혜택대상업체는 101개)	업체별 인증	품목별 인증
	272	2,244 (이중: 세번 01류~24류 관련 품목으로 인증 받은 업체는 21개)

자료: 관세청

14) 대 EU 건별 6천유로를 초과한 수출실적(전 품목 기준)이 있는 업체 중에서 한-EU FTA로 관세인하혜택을 받는 품목 (기존 무관세 품목 제외)을 수출한 이력이 있는 업체를 모수로 함. 관세율 free 수출자는 제외한 수입

15) HS 01~ 24류에 속하는 품목을 수출한 업체의 수입(단, 건당 6000유로 초과 실적 기준),

## □ 원산지인증수출자 종류 및 지정기관

## - 업체별 인증

- 업체가 수출 또는 생산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음, 3년 유효인증(연장가능)
- 업체의 원산지관리·증명 능력, 법규 준수도 등을 고려하여 수출 물품에 관계없이 관세당국이 인증수출자로 지정
- 전국 5개 본부세관(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 및 평택 직할세관에 신청

## &lt;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요건 요약&gt;

(프로세스)

- ✓ 원산지 관리 전산시스템 또는 업무매뉴얼 등 원산지 증명능력보유

(Specialist)

- ✓ 원산지 증명능력을 갖춘 관리 전담자 지정, 운영(외부인 지정가능)  
(서류보관) 원산지 증명서 작성대장 비치 관리해야함

(법규준수)

- ✓ 최근 2년간 원산지 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는 자
- ✓ 최근 5년간 수출자의 서류보관의무 위반 사실이 없는 자
- ✓ 최근 2년간 법 및 관세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신청한 사실이 없는 자
- ✓ 최근 2년간 5회 이상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이 반려된 사실이 없는 자

## - 품목별 인증

- 해당업체에 품목(HS 6단위)별로 인증을 부여, 인증품목(HS 6단위)에 대해 3년간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음(연장 가능)

- 전국 5개 본부세관(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 및 평택 직할세관에 신청

<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요건 요약>

<p>(원산지기준 충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품목(HS 6단위)이 수출국과의 FTA에 따른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li> </ul> <p>(Specialis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산지 증명능력을 갖춘 관리 전담자 지정, 운영(외부인 지정가능)</li> </ul> <p>(서류보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산지 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함</li> </ul> <p>(법규준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2년간 원산지 조사 거부사실 없음</li> <li>✓ 최근 5년간 수출자의 서류보관 의무 위반사실 없음</li> </ul>
--

자료: 관세청

□ 관세청의 인증수출자 지정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인증신청 : 사전상담 → 신청서 및 원산지증빙서류 등 제출</li> <li>② 인증요건 심사 : 인증요건 충족여부 확인(필요시 현지확인)</li> <li>③ 보정 또는 반려 : 수정·보완사항 발견시 또는 요건 미충족시</li> <li>④ 인증서 교부 : 인증요건 충족시(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li> <li>⑤ 연장신청 및 승인 : 인증 유효기간(3년) 연장신청 및 승인</li> <li>⑥ 사후관리 및 시정명령, 취소 : 인증 요건사실 변경시 요건 충족 여부 확인 및 미충족시 시정명령 또는 인증취소</li> </ul>
---

자료: 관세청

□ 원산지증명서 허위, 오류발급 시 제재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함

- 수출자는 수출품이 FTA원산지 규정에 부합하다는 증빙인 원산지 증명서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함. 위반시 처벌 받음(2천만원 이하 벌금)

- 수출자가 EU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를 속임수로 부정 발급할 경우 처벌과 함께 인증수출자의 인증 취소됨<sup>16)</sup>
- 원산지 증명서를 허위 발급시 처벌사항<sup>17)</sup>
  -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 : 2천만원 이하 벌금
  - 사실과 다르게 발급 : 300만원 이하 벌금

□ 관세청 원산지인증수출자 관련 컨설팅 활용

- <http://fta.customs.go.kr/>의 수출활용> 컨설팅신청 메뉴화면



16) 최근 2년간 법 및 관세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자는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신청할 수 없음, 단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는 신청자격요건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FTA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참조  
 17)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참조



## □ 관세청 원산지인증수출자(업체별, 품목별) 증명서 양식

[별지 제4호서식]

인증번호: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증유효기간:

위와 같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합니다.

년 월 일

관 세 청 장 적인  
○ ○ 세 관 장

**\* 참고사항**

1. 원산지인증수출업자의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인증서를 교부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원산지인증수출자의 대표자 성명·주소·사업자등록번호 등 인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인증서를 교부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3.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인증요건 및 원산지인증수출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으며, 그 요건 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보존용지120g/피)

[별지 제4호의3서식] <신설 2010.3.2>

인증번호: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증유효기간:

원산지인증 물품 내역				
적용대상협정	품명	품목번호 (HS 6단위)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

위와 같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시행규칙」 제7조의2의제6항에 따라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합니다.

년 월 일

관 세 청 장 적인  
○ ○ 세 관 장

**\* 참고사항**

1. 원산지인증수출업자의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인증서를 교부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원산지인증수출자의 대표자 성명·주소·사업자등록번호·인증수출물품 등 인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인증서를 교부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3.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인증요건 및 원산지인증수출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으며, 그 요건 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보존용지120g/피)

## □ 관세청 인증수출자 관련 문의

- 전화번호: 1577-8577, 이메일 : [fta@customs.go.kr](mailto:fta@customs.go.kr),
- 세관별 문의처

구 분	컨설팅 신청	인증 수출자 신청	원산지 검증
서울세관	02-510-1566	업체별	02-510-1593
		품목별	
인천세관	032-452-3161	좌동	032-452-3172
인천공항세관	032-722-4195	좌동	032-722-4195
부산세관	051-620-6636	051-620-6634	051-620-6645
대구세관	053-664-5212	053-664-5228	053-664-5231
광주세관	062-975-8042	062-975-8056	062-975-8057
평택세관	031-8054-7043	좌동	031-8054-7044

## □ 인증수출자 인증이 필요한 건별 EU 수출실적 해당국별 금액 환산

&lt;6,000유로에 해당하는 EU회원국 각국 해당금액&gt;

	국가코드	EU국가	국가영문명	Currency	화폐종류	6천유로해당금액
1	BE	벨기에왕국	BELGIUM	Euro		
2	BG	불가리아공화국	BULGARIA	Bulgarian Lev (New)	BGN	11,735
3	CZ	체코공화국	CZECH REPUBLIC	Czech Koruna	CZK	150,000
4	DK	덴마크왕국	DENMARK	Danish Krone	DKK	45,600
5	DE	독일연방공화국	GERMANY	Euro		
6	EE	에스토니아공화국	ESTONIA	Kroon		
7	IE	아일랜드	IRELAND	Euro		
8	GR	그리스공화국	GREECE	Euro		
9	ES	스페인왕국	SPAIN	Euro		
10	FR	프랑스공화국	FRANCE	Euro		
11	IT	이탈리아공화국	ITALY	Euro		
12	CY	사이프러스공화국	CYPRUS	Cyprus Pound		
13	LV	라트비아공화국	LATVIA	Latvian Lat	LVL	4,217
14	LT	리투아니아공화국	LITHUANIA	Lithuanian Litas	LTL	21,000
15	LU	룩셈부르크대공국	LUXEMBOURG	Euro		
16	HU	헝가리공화국	HUNGARY	Forint	HUF	1,523,760
17	MT	몰타	MALTA	Maltese Lira		
18	NL	네덜란드왕국	NETHERLANDS	Euro		
19	AT	오스트리아공화국	AUSTRIA	Euro		
20	PL	폴란드공화국	POLAND	Zloty	PLZ	28,000
21	PT	포르투갈공화국	PORTUGAL	Euro		
22	RO	루마니아	ROMANIA	Leu	RON	25,603
23	SI	슬로베니아공화국	SLOVENIA	Tolar		
24	SK	슬로바키아공화국	SLOVAKIA	Slovak Koruna		
25	FI	핀란드공화국	FINLAND	Euro		
26	SE	스웨덴왕국	SWEDEN	Swedish Krona	SEK	64,000
27	GB	영국	UNITED KINGDOM	Pound Sterling	GBP	5,700

자료: 관세청

## 5. 주요 품목별 원산지 규정

### 가. 원산지 판정기준

- 한-EU FTA는 특혜원산지 판정기준으로 완전생산기준<sup>18)</sup>, 실질적 변형기준<sup>19)</sup>, 각품목에 대한 개별적 원산지 판정기준 등을 규정함
  - 특정 품목이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협정문의 원산지관련 의정서(외교통상부 FTA포털)를 참조해야하며, 편의상 관세청 FTA 포털<sup>20)</sup>에서 EU HS 코드 혹은 상품명을 넣어 검색하여 볼 수 있음
  - 생산된 제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요건별로 적용되는 경우, 비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 역시 협정문과 그 부속서를 참고하여야 함
  - 합당한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은 아래와 같음
    - 양국의 영역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식물
    - 양국의 영역에서 나고 자란 동물
    - 양국영역에서 자란 동물로부터 획득한 상품
    - 양국의 영역에서 채취한 광물 및 천연자원
    - 양국의 영역에서 어로행위, 양식 등을 통하여 획득한 상품
    -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그 선박에 의한 어로행위로 획득된 상품과 다른 상품 및 배타적으로 동 상품만 이용한 가공선박에서 생산된 제품
    - 당사국 영역에서 이루어진 제조 또는 가공공정으로부터의 폐기물 및 부스러기
    - 당사국 영역 밖의 해저 또는 하부토양으로부터 채취된 상품. 그 개발 권리가 있어야 함

18) 원재료부터 완전히 한 국가에서 생산, 최종 가공공정이 수행된 국가의 원산지를 부여

19) 생산과정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이뤄진 물품에 대해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 변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

20) <http://fta.customs.go.kr/kcsweb/template/html/fta2010/html/kor/main/hsgod/DBAQ638.html>

-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한 경우 역내에서 충분한 작업 및 가공을 거쳐 획득한 제품(materials have undergo sufficient working or processing in the party)은
- 실질적 변형기준에 의거 품목별 특성에 따라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또는 주요 공정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인정

### <실직적 변형기준>

세번 변경 기준	- 수입원료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한 경우 수입원료의 세번과 제품의 세번이 일정단위(HS 2단위, 4단위, 6단위) 기준으로 차이가 있어야 원산지를 인정
부가가치 기준	- 수입원료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할 경우 가공과정에서 일정수준이하(예: 공장도 가격 <sup>21)</sup> 기준의 45%)의 역외산 재료를 사용해야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
주요공정기준	- 화학반응, 정제공정, 블랜딩공정 등 특정한 공정을 거쳐 생산된 경우에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

#### 한-EU FTA 미소기준(De Minimis)<sup>22)</sup>

- 원산지 판정에서 역외산 재료가 양국이 합의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제품가격(공장도가)의 10% 미만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원산지를 인정

## 나. 품목별 특혜원산지 요건

- 특혜관세를 받기 위한 한국이 원산지인 증명서는 품목별로 규정된 기준에 부합해야 발급할 수 있음. 단, 일부품목의 경우 적용예외 물량이 있음

21) 최종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당사국 내의 제조자의 공장도 상품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임. 다만 그 가격은 동 상품에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격을 포함하고, 동상품의 수출시 환급되는 내국세를 공제

22)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의 경우 미미한 가격 또는 중량의 역외산 재료가 세번변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원산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 <주요품목의 원산지 기준>

품목	원산지 기준 및 예외 기준
쌀, 녹차, 인삼, 참기름 및 관련제품	역내산(완전생산기준) 사용
국수, 라면	원산지 기준 사실상 제외
비스켓	원산지 기준 면제물량 있음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역내에서 태어나고 자란것(완전생산기준)
수산물	역내에서 어획된 것(완전생산기준)
- 수산가공품(16류)	완전생산기준, 어묵(160420)은 원산지 기준 면제물량 있음
- 양식수산물	완전생산기준
담배	역외산 재료는 30%까지 허용하되, 기준 면제물량 있음

과실주스와 채소주스 '채소주스'(HS 2009.80)

- 수입산 재료로 만든 채소주스를 한국산으로 인정
  - \* 단 제2009호로 수입한 재료는 제외
  - \* 사용된 제17류(당류)의 재료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넘어서는 안됨

곡류가공품 '국수'(HS 1902.19)

- 수입산 재료로 만든 국수를 한국산으로 인정
  - \* 단, 제1902호로 수입한 재료는 제외

기타 파스타 '라면'(HS 1902.30)

- 수입산 재료로 만든 라면을 한국산으로 인정
  - \* 단, 제1902호로 수입한 재료는 제외

□ 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제품 ‘비스킷’(HS 1905.90)

- 수입산 재료로 만든 비스킷을 한국산으로 인정

\* 단, 제11류, 제1905호로 수입한 재료는 제외

\* 단, 연간 270톤의 쿼터에 대해서는 재료와 관계없이 한국산으로 인정(EU선착순)

□ 켈런(담배포함) ‘담배’(HS 2402.20)

- 수입산 재료로 만든 담배를 한국산으로 인정

\* 단, 제2402호로 수입한 재료는 제외

\* 연간 250톤의 쿼터에 대해서는 한국산 인정(EU 선착순)

□ 수산가공품(제16류)

- 수산가공품은 그 원료구성에 있어 1류는 수입산을 사용하여도 한국산이 되지만, 03류를 재료로 투입하는 경우 완전생산기준(제3류는 완전획득 생산 기준 합의사항)의 적용을 받음. 어묵(160420)은, 제3류를 재료로 투입하는 경우, 수입산 재료로 만든 어묵도 일부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일정물량은 예외가 있음

• 원산지 증명에 어묵조제품의 예외물량이라고 쓰는 경우, 원산지 증명은 어묵조제품의 어류함량이 최소 40%이며, 명태 종(테라그라 찰코그라마, Theragra Chalcogramma)이 연육의 주요원료<sup>23)</sup>로 사용되었다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야함

• 대 EU수출 어묵은 연차별로 쿼터를 두어 원산지 예외 물량

1년차	2년차	3년차 및 그 이후
2,000톤	2,500톤	3,500톤

23) 필요시 주요원료의 개념은 한-EU 관세위원회에서 해석함

## 첨부 1) EU의 양허제의 쌀관련 품목

CN 2007	품목	관세율
1006 1010	종자용 벼	7.7
1006 1021	벼 데친것, 둥근 것	211/t
1006 1023	벼 데친것, 중간의 것	211/t
1006 1025	벼 데친것, 긴것, 가로세로비율이 2초과3미만	211/t
1006 1027	벼 데친것, 긴것, 가로세로비율이 3이상	211/t
1006 1092	벼 데친것 이외 둥근것	211/t
1006 1094	벼 데친것 이외 중간의 것	211/t
1006 1096	벼 데친것 이외 긴것, 세로가로비율이 2초과 3미만	211/t
1006 1098	벼 데친것 이외 긴것, 세로가로비율이 3이상	211/t
1006 2011	현미 데친것 둥근것	264/t
1006 2013	현미 데친것 중간의 것	264/t
1006 2015	현미 데친것 긴것, 세로가로 비율이 2초과 3미만	264/t
1006 2017	현미 데친것 긴것, 세로가로 비율이 3이상	264/t
1006 2092	현미 데친것이외 기타, 둥근것	264/t
1006 2094	현미 데친것이외 기타, 중간의 것	264/t
1006 2096	현미 데친것이외 기타, 긴것, 세로가로 비율이 2초과 3미만	264/t
1006 2098	현미 데친것이외 기타, 긴것, 세로가로 비율이 3이상	264/t
1006 3021	정미, 부분도정미, 데친것, 둥근것	416/t
1006 3023	정미, 부분도정미, 데친것, 중간의 것	416/t
1006 3025	정미, 부분도정미, 데친것, 긴것, 세로/가로비율이 2초과 3미만	416/t
1006 3027	정미, 부분도정미, 데친것, 긴것, 세로가로 비율이 3이상	416/t
1006 3042	정미, 부분도정미, 데친것 이외 기타, 둥근것	416/t
1006 3044	정미, 부분도정미, 데친것 이외 기타, 중간의 것	416/t
1006 3046	정미, 부분도정미, 데친것 이외 기타, 긴것, 세로/가로비율이 2초과3미만	416/t
1006 3048	정미, 부분도정미, 데친것 이외 기타, 긴것, 세로/가로비율이 3이상	416/t
1006 3061	완전도정미, 데친것, 둥근 것	416/t
1006 3063	완전도정미, 데친것, 중간의 것	416/t
1006 3065	완전도정미, 데친것, 긴 것, 세로/가로비율이 2초과3미만	416/t
1006 3067	완전도정미, 데친것, 긴 것, 세로/가로비율이 3이상	416/t
1006 3092	완전도정미 데친것이외 기타, 둥근것	416/t
1006 3094	완전도정미 데친것이외 기타, 중간의 것	416/t
1006 3096	완전도정미 데친것이외 기타, 긴것, 세로/가로비율이 2초과3미만	416/t
1006 3098	완전도정미 데친것이외 기타, 긴것, 세로/가로비율이 3이상	416/t
1006 4000	쇄미	128/t
1102 9050	곡분-쌀가루	138/t
1103 1950	분쇄물 및 조분 - 쌀의 것	138/t
1103 2050	펠리트-쌀의 것	138/t
1104 1991	가공곡물-플레이크(쌀의 것)	234/t
1901 9099	맥아엑스와 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 기타	7.6 + EA <sup>24)</sup>

자료: 외교통상부 FTA포털 관세양허표

24) EA는 농업적구성요소(agricultural component) 추가 관세사항으로 유지방, 유단백, 수크로스 등 성분에 따른 관세 테이블에 의해 추가되는 관세임

## 첨부 2) 기존시장진입가격제도 해당품목의 EU 양허유형

CN 코드	품목	철폐일
0702 0000	토마토(신선 또는 냉장)	최혜국 실행관세율(종량제)
0707 0005	오이	즉시철폐
0709 9070	주키니	이행 5년차의 첫째날
0709 9080	숨영경귀	이행 10년차의 첫째날
0805 1020	스위트오렌지(신선)	최혜국 실행관세율(종량제)
0805 2010	클레멘타인	이행 15년차의 첫째날
0805 2030	몬레알레 및 세트수머	최혜국 실행관세율(종량제)
0805 2050	맨더린 및 월킹	이행 15년차의 첫째날
0805 2070	탄저린	이행 15년차의 첫째날
0805 2090	맨더린 기타, 유사 감귤류 잡종	이행 15년차의 첫째날
0805 5010	레몬(시트리스리몬, 시트리스리머늄)	이행 2년차의 첫째날
0806 1010	신선포도(식용)	이행 17년차의 첫째날
0808 1080	사과 기타의 것(사이다사과, 벌크, 9.16-12.15- 이외의 것)	이행 10, 2025년차의 첫째날
0808 2050	배, 기타(페리베, 벌크, 8.1~12.31- 이외의 것)	즉시철폐
0809 1000	살구	이행 7년차의 첫째날
0809 2005	신체리(푸루누스 세라누스 종)	즉시철폐
0809 2095	신체리 이외 기타	즉시철폐
0809 3010	신선 넥타린	이행 10년차의 첫째날
0809 3090	신선 복숭아 기타	이행 10년차의 첫째날
0809 4005	신선 자두	이행 10년차의 첫째날
2009 6110	포도주스, 발효되지 아니한 것, 20도에서 브릭스 30 이하, 100킬로그램당 18유로 초과, 설탕 혹은 감미료포함 불문(주정을 포함한 것 제외)	즉시철폐
2009 6919	포도주스, 발효되지 아니한 것, 20도에서 브릭스 67 이하, 100킬로그램당 22유로 초과, 설탕 혹은 감미료포함 불문(주정을 포함한 것 제외)	즉시철폐
2009 6951	농축포도주스, 발효되지 아니한 것, 20도에서 브릭스 30초과 67이하, 100킬로그램당 18유로 초과, 설탕 혹은 감미료포함 불문(주정을 포함한 것 제외)	즉시철폐
2009 6959	포도주스, 발효되지 아니한 것, 20도에서 브릭스 30초과 67이하, 100킬로그램당 18유로 초과, 설탕 혹은 감미료포함 불문(주정을 포함한 것 제외)	즉시철폐
2204 3092	포도주스, 발효되지 아니한 것, 제22류의 추가 주 제7호에 규정도니 농축된 것, 섭씨 20도에서 1.33g/cm <sup>3</sup> 농도이하, 용량기준 실제 알코올농도 0.5%초과 1%이하(알코올 첨가로 발효중지된 것 제외)	즉시철폐
2204 3094	포도주스, 발효되지 아니한 것, 농축되지 아니한 것, 섭씨 20도에서 1.33g/cm <sup>3</sup> 농도이하, 용량기준 실제 알코올 농도 0.5%초과 1%이하(알코올첨가로 발효중지된 것 제외)	즉시철폐
2204 3096	포도주스, 발효되지 아니한 것, 제22류의 추가 주 제7호에 규정된 농축된 것, 섭씨 20도에서 1.33g/cm <sup>3</sup> 농도초과, 용량기준 실제 알코올농도 0.5%초과 1%이하(알코올 첨가로 발효중지된 것 제외)	즉시철폐
2204 3098	포도주스, 발효되지 아니한 것, 농축되지 아니한 것, 섭씨 20도에서 1.33g/cm <sup>3</sup> 농도초과, 용량기준 실제 알코올 농도 0.5%초과 1%이하(알코올첨가로 발효중지된 것 제외)	즉시철폐

자료: 외교통상부 FTA포털 관세양허표

25) 후지종의 경우



**aT Focus**

2011. 1. 28 창간

발 행 처 : 농수산물유통공사

발 행 일 : 2011년 7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32 aT센터

문 의 처 : 농수산물유통공사 식품수출정보팀  
02) 6300-1394 / info1@kati.net

본 자료는 KATI([www.kati.net](http://www.kati.net)) > 무역정보 > 발간책자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외교통상부의 FTA포탈의 한 EU FTA협정서, [www.ec.europa.eu](http://www.ec.europa.eu), 관세청 FTA포탈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한 자료입니다. 금번 자료에서 품목별 세율을 검색한 결과는 EU수출시 적용받는 세관코드가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하시어 이에 따른 법률적 책임이 없으므로 정확한 세율 및 원산지 결정기준은 FTA협정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위 문의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